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경기문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218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경기문, 김경훈, 김원중,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박중화, 윤기섭, 이상욱,
이종배, 이종환, 황철규
의원(12명)

1. 주문

- 서울권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는 4개 회사 운행 대수는 약 440대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고 운송사별 등록된 차고지를 보유하여 운행되고 있음.
- 다만, 서울 전 지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시민들의 신속한 이용과 편의를 위해 기점 부근에 주차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 법에서는 등록된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는 불법인 상황이며 운영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할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에 밤샘주차 예외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서울권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는 4개 회사가 있고 운송업체별 등록차고지는 1~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전지역을 약 1천 회 이상 운행하고 있음. 운행 시간은 회차 지점에서 새벽 1시에 운행을 종료하고 첫차는 새벽 4시에 운행을 시작하고 있음.
- 이는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운행 시간임에도 실질적인 등록차고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기점으로 복귀해 다시 첫차 운행을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고 등록된 차고지 외 기점 부근 주차장에 공항버스 밤샘 주차 허용이 필요함.

-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실제 등록차고지 밤샘주차후 첫차를 위해 최소 80분 이상을 소요하면서 운수종사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시 운행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 시내 운행 기점 주변에 새로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측면이 있고, 기점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원활한 공항버스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만큼 법정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 기점 부근 주차장에 밤샘주차 예외를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4.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서울권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4개 회사가 있고 운송업체별 등록차고지는 1~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전지역을 약 1천 회 이상 운행하면서 시민들이 공항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송 수단이다.

실질적인 공항버스 운행 시간은 회차 지점에서 새벽 1시에 운행을 종료하고, 새벽 4시에 첫차 운행을 시작하고 있으나 운행종료 후 등록된 차고지로 복귀하고 몇 시간 만에 다시 기점으로 이동해 첫차를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등록된 차고지 외에 기점 부근의 주차장을 이용하여 밤샘주차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등록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후 첫차를 위해 최소 80분 이상 이동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피로를 가중 시키고 이는 결

국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공항버스의 정시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서울시내 운행 기점 주변에 새로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건상 불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시민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법정 차고지를 보유한 공항버스의 경우에는 등록된 차고지 외에도 기점 부근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4.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